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6조의7제1항 중 “「상법」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(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상법」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(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
2. 「상법」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) 제176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가 「상법」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제176조의7(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제5항 전단에서 “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각각 「상법」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(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<신 설> <신 설>	제176조의7(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) ①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1. 「상법」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(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2. 「상법」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

② ~ ④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